

공 고

◆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0-1463호

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(안) 열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317호(1996.11.20.)로 최초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12호(2019.07.04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(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10월 15일

동 작 구 청 장

가. 열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

나.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동작구청 도시계획과(노량진로 74, 유한양행 3층, ☎ 02-820-9734)

다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

1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m ²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동작구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동작구 노량진동 46번지 일원	87,123	-	87,123	1996.11.20. (서울시고시 제1996-317호)	

2)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생략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3)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생략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4)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: 생략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라. 관계도서 :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마. 기타사항 :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◆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0-1469호

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(의제)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43호(2006.12.21.)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503호(2009.12.10.)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98호(2018.06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54호(2019.02.0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61호(2020.06.25.)에 의거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된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,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공람하고 의견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.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은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동작구청 도시개발과로 의견서【제목, 내용, 주소, 성명(날인)】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10월 15일

동 작 구 청 장